

제172회 영등포구의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2. 12. 10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基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162호로 2012년 11월 14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교육·복지·사람중심의 새영등포」라는 구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개편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과 신설

- 자동차관리과
- 제9조(건설국)제1항 자동차관리과 신설

### 나. 과 통합

- 홍보관광과 + 전산정보과 ⇒ 홍보전산과
- 제5조(행정국)제1항 홍보전산과 신설

## 다. 과 업무이관에 따른 국별 업무 이관

- 제5조(행정국)제2항 제18호를 제6조(재정국)으로 이관
  - 3. 통계, 기록물관리 및 문서관리 · 보존에 관한 사항
- 제6조(재정국)제2항 제10호 중 구정의 정보화를 제5조(행정국)으로 이관
  - 6. 구정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 제7조(복지국)제2항 제7호를 제5조(행정국)으로 이관
  - 10. 외국인 및 다문화업무에 관한 사항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업무 이관 및 통·폐합 등 국간 기능조정과 사무의 재배치를 통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1항 행정국에 “홍보관광과”를 삭제하고 “홍보전산과”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에 행정국 소관 업무 중 “문서관리 및 보존, 기록물관리 업무”를 재정국으로 이관하고 “구정의 정보화 업무”를 재정국에서 “다문화 업무”를 복지국에서 각각 이관 받음.
- 안 제6조제2항 재정국에 행정국 소관 업무였던 “기록물관리 및 문서관리·보존 업무”를 이관 받고 “구정의 정보화 업무”를 행정국으로 이관 시킴.
- 안 제7조제2항 복지국에 복지국 소관 업무이었던 “다문화 업무”를 삭제하여 행정국으로 이관 시킴.
- 안 제9조제1항 건설국에 자동차관리과를 신설 함.
- 안 부칙에 시행일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
- 이번 조례 개정으로 조직이 개편되면 2012년 12월 현재 7국(소), 1담당관, 33과, 18동, 192팀이 7국(소), 1담당관, 33과, 18동, 191팀으로 조정되어 1개의 팀이 감소하게 됨.

- 급변하는 행정수요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설계와 운영도 이에 맞게 높은 유연성과 신축성을 가지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조직 변화관리가 필요하며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 및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구정목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부서간 업무연계성이 부족한 부분은 정비하여 상호 협력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고 또한 날로 증가하는 무보험운행, 무단방치차량의 효율적 처리와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의 등록번호판 영치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자동차관리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결과 관련법규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음.
- 다만, 제6조제1항 재정국에 두는 과를 아래와 같이 보완이 필요함.

원           안	수   정   의   견
제6조(재정국) ① 재정국에 기획예산과, 재무과, <u>지역경제과</u> , <u>전산정보과</u> , 세무과, 부과과, 한시기구인 일자리추진단을 둔다.	제6조(재정국) ① ----- ----- <u>지역경제과</u> ----- ----- -----.

# 참 고 자 료

## 1 조직개편 주요내용

유형별 현황

신 설		폐 지		통 합		이 관		명칭변경			비 고
부서	팀	부서	팀	부서	팀	팀	업무	국	부서	팀	
1	6	-	1	1	6	2	4	-	-	7	

조직 변동사항

구 분	국(소)	담당관	과	동	팀
조정전	7	1	33	18	192
조정후	7	1	33	18	191
증 감	-	-	-	-	△1

주요내용

구 분		정 비 내 역
신 설	부 서 (+1)	① 자동차관리과
	팀 (+6)	① 보육행정팀 ② 장애인자립지원팀 ③ 녹색성장팀 ④ 교통사법경찰팀 ⑤ 변호판영치팀 ⑥ 정신건강증진팀
통 합	부 서 (△1)	① 홍보관광과 + 전산정보과 → 홍보전산과
	팀 (△6)	① 복지노무팀 + 능력개발팀 → 교육후생팀 ② 언론팀 + 홍보팀 → 언론홍보팀 ③ 정보통신팀 + u-city관리팀 → 정보통신팀 ④ 정보기획팀 + 정보운영팀 → 전산운영팀 ⑤ 여성정책팀 + 출산장려팀 → 여성출산정책팀 ⑥ 주차운영팀 + 그린파킹팀 → 주차운영팀
폐 지	팀 (△1)	① 전산통계팀(업무 이관)
이 관	팀 (+2)	① 관광정책팀 : 홍보관광과 → 문화체육과 ② 기록정보팀 : 민원여권과 → 기획예산과
	업 무 (+4)	① 직원전화점검 : 감사담당관 → 총무과 ② 구민정보화 교육업무 : 전산통계팀 → 전산운영팀 ③ 통계업무 : 전산정보과 → 기획예산과 ④ 다문화가족지원업무 : 가정복지과 → 자치행정과
명칭 변경	팀 (7)	① 사회적기업팀 → 사회적경제팀, ② 장애인복지팀 → 장애인복지정책팀 ③ 조경녹지팀 → 조경팀 ④ 지적재조사팀 → 공간정보팀 ⑤ 재난예방팀 → 재난관리팀 ⑥ 고객지원팀 → 행정팀 ⑦ 복지지원팀 → 복지팀

## 2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 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